

동두천시 문화예술 지원·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09. 9. 23. 김정자 의원외3명이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9. 9. 28.

다. 상정일자 : 제19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본회의 상정, 제안설명, 질의답변

제2차 본회의 상정, 토론 및 검토

제3차 본회의 상정, 검토 및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이 제정 조례안은 「문화예술 진흥법」 제3조에 따라 동두천시 문화예술 진흥의 지원·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, 우리시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현실에 맞는 제도 운영을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지원대상 사무 또는 사업을 정함 (안 제3조)
- 예충이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함 (안 제4조)
-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에 보조금 신청사항을 정함 (안 제5조)
-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 사항을 정함 (안 제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이 제정조례안은 「문화예술 진흥법」에 의거 문화예술 진흥의 지원 육성에 관하여 예충이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과 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(조례) 및 같은 법 제24조(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)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제정되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